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사유인 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처음 받는 날’을 ‘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’로 변경하여 우연한 사유로 취업지원 종료일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,

취업지원 신청서 상 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’에 ‘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’을 추가하여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 심사에 필요한 공적 자료를 연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제3호 중 “수당을 처음 받는 날”을 “수당 수급기간의 첫 날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8.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
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제4호 중 “이전소득”을 “이전소득, 취업지원·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0조(취업지원 종료일 등) ① (생략)	제20조(취업지원 종료일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 우” 및 “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수당을 받게 된 경우: <u>수당을</u> <u>처음 받는 날</u>	3. ----- <u>수당</u> <u>수급기간의 첫 날</u>
4. 삭제	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